관리단체운영 규정

2016. 9. 6. 제정
2020. 4.16. 개정
2021.10. 5. 개정
2021.12.13. 개정

제1조(근거 및 목적)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북구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 <개정 20. 4. 16.> <개정 21. 10. 5.> <개정 21. 12. 13.>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체육회의 회원단체에만 적용한다. <개정 20. 4. 16.> <개정 21. 12. 13.>

제3조(관리단체 지정의 통지) 체육회는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해당 회원단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지한다. <개정 20. 4. 16.> <개정 21. 12. 13.>

1. 관리단체 지정사유
2. 관리단체 지정일
3.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
4. 임원인준 취소
5. 그 밖의 주요사항

제4조(관리단체 지정의 효력)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, 체육회가 해당 회원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. <개정 20. 4. 16.> <개정 21. 12. 13.>

② 해당 회원단체 임원 및 관계자(이하 “회원단체 관계자”라 한다)는 회원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회원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. 4. 16.> <개정 21. 12. 13.>

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, 해당 관리단체는 통지를 송달받는 즉시 체육회의 회원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한다. <개정 20. 4. 16.> <개정 21. 12. 13.>

④ 관리단체 지정 시 해당 회원단체의 대의원 중 종목단체규정 제6조제1항 1호, 2호에 따른 대의원은 관리단체 지정 일부터 2년간 소속 단체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. 다만, 관리단체 운영 상황에 따라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<신설 21. 12. 13.>

제5조(회원단체 관계자의 의무)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 관계자는 체육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체육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제공 등 체육회의 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. 4. 16.> <개정 21. 12. 13.>

② 회원단체 관계자는 체육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·사무 공간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. 4. 16.> <개정 21. 12. 13.>

③ 체육회는 체육회의 관리단체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회원단체 관계자를 즉시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. <개정 20. 4. 16.> <개정 21. 12. 13.>

④ 회원단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회원단체가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항옮김 20. 4. 16.> <개정 21. 12. 13.>

제6조(관리위원회의 설치) ① 체육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. 4. 16.> <개정 21. 12. 13.>

② 위원회는 체육회 회원단체협력위원회 또는 종목단체 관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체 할 수 있다. <개정 20. 4. 16.>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. <개정 21. 12. 13.>

1. 대의원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
2.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
3. 법제·상벌에 관한 사항 <개정 21. 12. 13.>
4. 사무국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
5. 회원단체 규약(정관)에 규정된 사업 및 관련 모든 사항 <개정 21. 12. 13.>

② 위원회는 해당 관리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의 대의원총회 개최 및 임원 선임에 대한 기간 등의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. 4. 16.> <개정 21. 12. 13.>

제8조(위원회의 및 관리단체 운영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 <개정 21. 12. 13.>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1. 12. 13.>
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. 4. 16.>
3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4.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1. 12. 13.>

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나눠 맡아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1. 12. 13.>

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 소위원회(대회위원회, 심판위원회, 스포츠공정위원회 등)를 둘 수 있으며, 각종 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. 4. 16.> <개정 21. 12. 13.>

제9조(회장 선임절차) ①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(대의원이 없는 경우 체육회에서 추천)하여 회장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회장을 최종 선임하며, 선임된 회장은 사무처와 사전 협의하여 집행부를 구성한다. <개정 20. 4. 16.>
② 체육회 종목단체규정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선임될 수 없다. <개정 20. 4. 16.>

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체육회 정관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. 4. 16.> <개정 21. 10. 5.> <개정 21. 12. 13.>

부 칙(2016. 9. 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4. 1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10. 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12. 1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